

國際環境法の 原則*

盧明濬**

< 차례 >

- | | |
|--|------------------------------|
| I. 序言 | VI. 汚染者 負擔의 原則 |
| II. 自然資源에 대한 永久的 主權과
越境 環境被害 防止의 原則 | VII. 持續可能한 開發의 原則 |
| III. 豫防의 原則 | VIII. 共同的 그러나 差別的인 責任의
原則 |
| IV. 事前注意의 原則 | IX. 結論 |
| V. 國際協力の 原則 | |

I. 序 言

국제환경법은 다른 학문과 달리 그 역사가 매우 짧고 아직도 발전도상에 있다. 국제환경법의 성립후 관습법상 일반원칙이 성립되리만큼 충분한 시간이 흐르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환경법의 일반원칙이 무엇이나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다. 한편 국제법은 그 역사가 매우 오래 관습법

* 이 논문은 필자가 2001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연구년 기간중 미국 Georgetown대학교에 연구차 체류중에 준비된 것임. 이 논문작성에 많은 조언을 해준 Georgetown대학교 법대의 Edith Brown Weiss교수와 연구시설을 제공해 준 이 대학 도서관직원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함.

** 韓國外大 敎授.

상 확립된 일반원칙이 다수 존재한다. 국제환경법은 국제법과 국내법에서 대부분 유래되어 나왔기 때문에 국제환경법의 원칙은 국제법과 국내법의 일반원칙에서 다수 유추할 수 있다. 국제환경법의 초기에는 국제조약과 국제관습법과 같은 국제법의 전통적인 淵源에서 파생된 일반원칙들이 국제환경법에 수용되어 국제환경법의 일반원칙을 이루게 되었다. 1972년의 스톡홀름인간환경선언, 1982년의 세계자연헌장, 그리고 1992년의 리우환경개발선언 등에 명문화된 이러한 원칙들이 환경관련 국제협약이나 각국의 환경관련 국내법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부터 국제환경법의 원칙으로 발전되게 된 것이다.

本稿에서 필자는 지금 형성중에 있는 국제환경법의 일반원칙을 가려내어 그 내용을 파악하려고 한다. 국제환경법의 원칙으로는 스톡홀름선언의 제21원칙으로 명문화된 자연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와 越境 환경피해의 금지 원칙, 예방의 원칙, 사전예방주의의 원칙, 국제협력의 원칙,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인 책임의 원칙, 오염자 부담의 원칙, 지속개발의 원칙 등을 들 수 있는바 이들 원칙이 이미 관습법으로 확립되었느냐에 관해서는 논란이 많다. 필자는 이러한 원칙들을 중심으로 本稿에서 그 내용을 파악하고 그 확립여부를 논하고자 한다.

II. 自然資源에 대한 永久的 主權과 越境 環境被害 防止의 原則

모든 국가는 자국내의 자연자원에 대하여 영구적인 주권을 향유한다. 이러한 자연자원에 대한 주권원칙(Principle of national sovereignty over natural resources)은 1952년이후 유엔총회가 채택한 여러 결의안

에서 확인되고 있다. 특히 1962년 채택된 총회의 결의안은 자연자원
 대한 국가의 영구적인 주권적 권리는 관계국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행사되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¹⁾ 후에 국제재판소와 국제조약들은 이러한
 권리가 관습법을 반영하고 있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예컨대 1971년의 습
 지의 보호에 관한 람사(Ramsa)협약, 1982년의 유엔해양법협약, 1983년의 열
 대목재림협정, 1992년의 생물다양성협약, 1989년의 바젤협약 등은 이러
 한 권리가 국제환경법의 일반원칙을 반영하는 것임을 명백히 하였다.

자국내 자연자원에 대한 영구주권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가는
 자국의 관할권내의 활동이 다른 국가의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할
 의무(Responsibility not to cause damage to the environment of other
 states)가 있다. 이러한 원칙은 일찌기 미국과 캐나다간의 트레일 제련
 소사건(Trail Smelter Case)²⁾에서 확립된바 있다. 이 사건은 캐나다의
 트레일(Trail)에 소재하고 있는 제련소에서 방출하는 유독가스가 미국
 의 산림을 황폐시키자 미국이 중재재판에 제소하여 발생한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중재재판소는 어느 국가도 국제법원칙상 타국 영토내의
 재산이나 인명에 대하여 피해를 주도록 자국 영토의 사용을 방치할 권
 리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월경 환경피해 방지의 원칙은 1972년의 스톡홀름 인간환경선언에도
 제21원칙으로 반영되었는데 이 원칙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다.

각국은 유엔헌장 및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각국의 자원을 그 환경정
 책에 의거하여 개발할 주권적 권리를 가진다. 각국은 또한 자국의 관할
 권내 또는 지배하의 활동이 타국의 환경 또는 국가관할권 범위를 벗어
 난 지역의 환경에 손해를 주지 않도록 조치할 책임을 진다.

1) UNGA res. 1803(XVII), 1962.

2) Trail Smelter Arbitration, 3 U.N.R.I.A.A., 1905, 1965(1938 and 1941).

1992년의 리우환경개발선언도 이를 답습하여 제2원칙에서 “국가는 유엔 헌장 및 국제법원칙과 조화를 이루면서 자국의 환경 및 개발정책에 따라 자국의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주권적 권리를 가지며, 자국의 관할권이나 통제내에 있어서의 활동이 다른 국가나 자국의 관할권 밖에 있는 지역의 환경에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할 책임을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웃을 해치지 않도록 재산권을 행사하라”(sic utere tuo non alienum laedus)는 로마法諺은 트레일 제련소사건이외에도 콜푸해협사건(Corfu Chanel Case),³⁾ 라누湖사건(Lake Lanoux Arbitration)⁴⁾ 등에서 지지를 받았다. 콜푸해협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모든 국가는 타국의 권리에 반하는 행위를 위하여 자국영토가 의도적으로 사용되도록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판시하였다. 프랑스와 스페인간의 라누湖사건에서도 중재재판소는 이와 같은 원칙을 지지하였다. 이러한 사건들이 스톡홀름선언 제21원칙과 리우선언 제2원칙이 선언하고 있는 越境 환경피해 방지의 원칙의 성립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된 것이다. 스톡홀름선언 제21원칙이 선언한 이러한 원칙은 이상과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이미 국제환경법상 일반원칙으로 성숙되었다고 볼 수 있다.

Ⅲ. 豫防의 原則

각국은 자국내에서 환경에 피해를 끼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예방의 원칙(Principle of Prevention)은 국가가 자국내에서 환경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환경을

3) Corfu Chanel Case(Merits), I. C. J. Rep.(1949), p. 22.

4) 12 U.N.R.I.A.A. 281(1957).

보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예방의 원칙은 사전주의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과 혼동될 수도 있으나 과학적 불확실성과 연계되어 있어 그 확립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많은 사전주의의 원칙 또는 어프러치와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

예방의 원칙은 국가가 환경에 대한 피해를 방지, 감소, 제한 또는 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원칙은 스톡홀름 제21원칙과 리우선언 제2원칙이 선언하고 있는 월경 환경피해 방지의 원칙과 두가지 점에서 구별된다. 첫째로 제21원칙은 타국의 주권존중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것임에 반하여 예방의 원칙은 자국내에서 환경에 대한 피해 그 자체를 방지 내지 감축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둘째로 각국은 국경을 초월하여 타국에 끼치는 환경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의 원칙에 따라 적절한 규제적, 행정적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자국의 관할권내에서의(within its own jurisdiction) 환경에 대한 피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⁵⁾

리우선언 제11원칙이 선언하고 있는바와 같이 모든 국가는 자국의 관할권내에서 환경에 피해를 끼치는 행위가 발생하기 이전에 효과적인 환경법규를 제정함으로써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스톡홀름선언도 여러번 예방의 원칙을 언급하고 있으나 아주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즉 제6원칙은 생태계에 중대하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가하지 않기 위해 유해물질의 배출 및 열의 방출을 과도한 양이나 농도로 행하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또한 제7원칙은 각국은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고 제15원칙은 거주 및 도시화의 계획은 환경에

5) Philippe Sands, Principle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Frameworks, Standards and Implementation, vol. 1(1995), pp. 194-195.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모든 인간의 최대한의 사회적, 경제적 및 환경상의 이익을 얻도록 입안되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밖에도 1978년 작성된 UNEP 원칙초안(UNEP Draft Principles) 제1원칙, 1982년의 세계자연헌장(World Charter for Nature) 등도 직접·간접으로 예방의 원칙을 지지하고 있다.

많은 국제환경협약이 예방의 원칙을 국제환경법의 일반원칙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오존층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 제2조는 각국이 오존층에 악영향을 미칠 인간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입법적 또는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생물다양성협약은 생물다양성의 손실을 방지할 의무, 기후변화협약은 기후체계에 대한 위험한 인위적 간섭을 방지할 의무, 유엔해양법협약은 해양오염의 방지할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해양법협약 제194조는 모든 국가는 개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해양오염을 방지, 경감, 또는 통제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도 예방의 원칙을 도입하고 있는 국제조약으로는 1951년의 국제식물보호협약(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제1조 1항, 1972년의 선박과 항공기로부터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협약(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Dumping from Ships and Aircraft), 일명 오슬로뎀핑협약 제1조, 1972년 채택된 폐기물과 기타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협약(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Dumping of Wastes and Other Matter), 일명 런던뎀핑협약 제1조, 선박에 의한 오염방지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by Ships, 일명 MARPOL Convention) 제1조 1항, 1974년의 육상起因 해양오염방지 협약(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Land-based Sources) 제1조, 1979년의 이동

야생동물의 보존협약(Convention on the Conservation of Migratory Species of Wild Animals) 제3조 4항, 1986년의 남태평양지역 자연자원 보존협약(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Natural Resources and the Environment of the South Pacific Region) 제5조 1항 등이 이다. 이상과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예방의 원칙은 국제환경법의 일반원칙으로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IV. 事前注意의 原則

예방의 원칙은 1930년대부터 국제환경협약과 기타 관련문서에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나 사전예방의 원칙 또는 사전주의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은 1980년대 중반부터 국제환경법 관련문서에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 원칙은 리우선언에 나와 있는 대로 심각한 환경피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과학적 확실성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미리 환경훼손 방지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국제사회에서 과학적 불확실성이 내재하고 있는 가운데서 국제환경법의 발달과 적용에 있어서 하나의 지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원칙의 관습법상 확립여부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분분하다. 찬성론자⁶⁾들에 의하면 이 원칙은 오존층의 파괴나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파괴현상에 대처

6) 예를 들면, James Cameron and Juli Aboucher, "The Status of the Precautionary Principle in International Law," in David Freestone and Ellen Hey(eds.), *The Precautionary Principles and International Law: The Challenge of Implementation*(1996), pp. 29-52; D. Freestone and E. Hey, "Origins and Development of the Precautionary Principle," in D. Freestone and E. Hey, *ibid.*, pp. 3-15; Owen McIntyre and Thomas Mosedale, "The Precautionary Principle as a Norm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Journal of Environmental Law*, vol. 9, no. 2, 1997, p. 221.

하기 위한 조기의 국제적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데 하나의 기초가 되는 국제관습법상 원칙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론자⁷⁾들은 이 원칙이 아직 국제관습법상 확립되어 있지 않고 과도한 규제를 유발하고 인간의 활동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⁸⁾ 이와 같은 이유로 사전주의의 원칙이 아니라 사전주의의 어프로치(precautionary approach)라고 불리우는 경우도 많다.

이 원칙은 독일의 환경정책에서 유래되어 나왔다고 보통 알려 지고 있다. 몰트케(Konrad von Moltke)가 영국의 왕립 환경오염위원회(Royal Commission on Environmental Pollution)의 제12차 보고서에서 지적한 대로 이 원칙은 독일정부가 1976년 처음으로 주장하기 시작한 사전예방의 원칙(Vorsorgeprinzip)에서 유래되어 나왔다. 그 후 독일 연방이미손방지법(Bundesimmissionsschutzgesetz) 제5조가 이 원칙을 정식으로 도입하였고 많은 국가와 국제기구들이 점차로 이 원칙의 유용성을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사전주의 원칙의 국제적 논의는 해양환경에 관련된 국제회의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1984년 브레멘에서 개최된 북해의 보호를 위한 제1차 국제회의(Fir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Protection of North Sea)는 독일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여 독일법상의 사전예방의 원칙을 정식으로 채택하였다. 또한 북해의 보호를 위한 제2차 국제회의의 참석자들은 1987년 이른바 런던선언을 발표하고 위험한 물질의 예기되는 폐해로부터 북해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전주의의 어프러치가 필요하다고 선언하였다.⁹⁾ 1990년 헤이그에서 개최된 제3차회의도 이 원칙을 계속해

7) 예를 들면 Patricia Birnie and Alan Boyle, *International Law and the Environment*(1992), p. 98; Daniel Bodansky, *Proceedings of the 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1991), p. 417.

8) Philippe Sands, *supra* note 6, pp. 208-209.

서 사용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¹⁰⁾ 1974년 육지起因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협약(Paris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from Land-based Sources)이 설립한 파리위원회와 오슬로위원회는 후에 이 원칙이 적용되는 지리적 범위를 북해에서 넘어서 북동대서양으로 확대하였고 이 원칙의 이행을 위한 문서도 채택하였다.¹¹⁾ 특히 오슬로위원회는 사전정당화절차(Prior Justification Procedure; PJP)를 통하여 사전주의 원칙을 실제로 이행하도록 하였다. 이 두 위원회의 노력으로 이 원칙이 1992년 북동대서양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of the North-East Atlantic)에 정식으로 도입되었다. 1989년의 UNEP집행위원회 회의와 1972년 채택된 런던뎀핑협약 당사국회의(1990년)도 해양오염과 해양투기와 관련하여 이 원칙을 채택하였다.

유엔 유럽경제위원회는 1990년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베르겐선언(Bergen Ministerial Declarat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관련정책이 사전주의 원칙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유엔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사회이사회(ESCAP)가 1990년 방콕에서 개최한 환경관련장관급회의가 채택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선언(Declaration on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Asia and the Pacific)도 동일한 내용을 도입하였다.

이 원칙을 처음으로 도입한 국제환경협약은 1985년의 오존층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과 1987년의 오존층을 소실시키는 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이다. 특히 몬트리올의정서는 오존층 파괴와 프레온가스 및 할

9) Paragraph VII, London Declaration, London, November 25, 1987.

10) Preamble, The Hague Declaration, March 8, 1990.

11) Freestone and Hey, *supra* note 7, pp. 5-6.

론가스와의 인과관계가 과학적으로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물질의 생산과 소비를 규제하고 있다.

아직 확립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많은 이 원칙의 핵심은 리우선언 제15원칙에 나타나 있는데 이 원칙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 국가의 능력에 따라 예방적 조치가 널리 실시되어야 한다. 심각한 또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 과학적 불확실성이 환경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비용/효과적인 조치를 지연시키는 구실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제15원칙이 적용되려면 두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먼저 우려되는 피해는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둘째로 취하려고 하는 조치는 환경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비용면에서 효율적이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예방조치는 각국의 능력에 따라서 취해져야 한다. 다시 말하여 이러한 조치를 취할 각국의 의무는 관계국의 경제적 재정적 능력에 따라서 이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조건은 다른 환경관련 국제적 문서에서는 찾아 볼 수 없다.¹²⁾ 리우회의가 채택한 의제21(Agenda 21)도 제17장에서 해양환경의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주의의 어프러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¹³⁾

사전주의의 원칙은 1990년이후에 체결된 거의 대부분의 국제환경협약에 도입되었다. 예를들면 생물다양성협약의 전문, 기후변화협약 제3조, 1996년의 런던뎀핑협약 추가의정서 제3조, 1995년의 경제왕래 어족 및 고도 회유성 어족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협정 제6조, 1991년의 유해

12) Rüdiger Wolfrum,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Purposes, Principles, and Means of Ensuring Compliance," in Fred L. Morrison, and Rüdiger Wolfrum(eds.), International, Regional and National Environmental Law(2000), pp. 11-12.

13) Chapter 17, Paragraph 17.21 of the Agenda 21.

폐기물의 아프리카반입 금지를 위한 바마코(Bamako)협약 제 4조 3항 (f), 1992년의 발트해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헬싱키협약 제3조 2항, 1992년의 북동대서양 환경보호를 위한 협약 제2조 2항(a), 마스트리트조약 제130R조 2항 등이다.

사전주의의 원칙이 국제관습법상 확립되었느냐에 관해서는 논란이 많다. 그러나 리우선언 제15원칙과 많은 환경관련 국제협약이 이 원칙을 정식으로 도입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국제환경법의 일반원칙으로 확립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¹⁴⁾

V. 國際協力の 原則

많은 환경관련 국제협약들이 국경을 초월하는 환경오염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각국이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1985년의 오존층의 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 제2조 2항은 오존층에 대한 인간활동의 영향과 오존층의 변화가 인간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관찰, 연구, 및 정보교환을 통하여 당사국이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1992년의 생물다양성협약 제5조도 일방 당사국이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지속적인 사용을 위하여 다른 당사국과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스톡홀름 인간환경선언 제24원칙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다.

14) Philippe Sands, *supra* note 6, pp. 212-213; Wolfrum, *supra* note 13, p. 15.

환경의 보호와 개선에 관한 국제문제는 국가의 대소를 불문하고 평등한 입장에서 협조적인 정신에 따라 취급되어야 한다. 다자간 규정, 양자간 규정 또는 그밖의 적당한 방법에 의한 협력은 모든 국가의 주권과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여 모든 분야의 활동에서 생기는 환경에 대한 악영향을 예방, 제거, 감소시키고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불가결하다.

이러한 원칙이 1972년 12월 15일의 유엔 총회 결의 제2995호와 1982년의 세계자연현장에 의하여 재확인되었다. 특히 세계자연현장은 공동의 활동과 정보교환과 협의를 포함한 그밖의 적절한 활동을 통해 각국은 자연의 보존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리우 환경개발선언도 특히 개도국과 선진국의 협력의 원칙에 기초를 두고 있다. 즉 제27원칙은 “각국과 국민들은 이 선언에 구현된 원칙을 준수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의 분야에 있어서의 관련국제법을 한층 발전시키기 위하여 성실하고 동반자적 정신으로 협력하여야 한다”라고 선언하였다. 리우선언은 또한 제9원칙에서 각국은 과학적 기술적 지식의 교환을 통하여 과학적 이해를 향상시키고 기술의 개발, 적용, 전파 그리고 이전을 증진시킴으로써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내재적 능력을 형성 강화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1995년 개최된 사회개발을 위한 정상회의(World Summit for Social Development)에서 117개국의 국가원수들은 사회내부와 개도국과 선진국들간의 협력정신에 입각하여 빈곤의 퇴치를 위한 통합적인 어프러치를 취할 것에 합의하였다.

1982년의 유엔해양법협약은 명시적으로 협력의 원칙을 도입하였다. 즉 제 19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각국은 세계적 기초 및 적절한 경우 지역적 기초에서 특수한 지역적 지형을 고려한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존을 위하여 본 협약에 따른 국제규칙, 기준, 권고된 관행 및 절차를 제정하고 발전시키는데 직접적으

로 또는 권한있는 국제기구를 통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국제협력의 의무는 구체적으로 정보교환의 의무, 긴급사태시 신속통보 및 지원의무, 사전통보 및 협의의 의무 등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다수의 환경관련 국제협약은 국가간의 환경관련 정보의 교환을 그 주요한 의무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예컨대 오존층의 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 제4조는 당사국은 과학적, 기술적, 사회·경제적, 상업적, 그리고 법적인 정보의 교환을 장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정보교환은 특히, 무역상의 비밀, 자료의 비밀취급 여부에 따라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 유엔해양법협약 제200조는 해양환경오염에 관한 정보의 교환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국제기구를 통하여 타국과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생물다양성협약도 제17조에서 당사국이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지속적인 사용에 관한 정보의 교환을 원활히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각국은 1986년 체르노빌 핵발전소의 원자로폭발사건과 같은 긴급재난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이해관계국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이해관계국들은 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리우선언 제18원칙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다.

각국은 다른 국가의 환경에 급격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어떠한 자연재해나 기타의 긴급상태를 상대방 국가에게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피해를 입은 국가를 돕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핵사고의 조기통고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조에 따라 핵사고국은 피해국과 IAEA에게 즉시 이 사실을 통고하여야 하며 핵사고에 의한

긴급사태시 지원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라 지원요청을 받은 국가는 지원여부를 즉시 결정하여 통고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이 협약은 조약당사국에게 원조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므로 이러한 지원의무가 국제환경법의 일반원칙으로 확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환경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국가는 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국가에게 모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원칙은 리우선언 제19원칙에 구현되어 있다. 즉 제19원칙은 “각국은 국경을 넘어서 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국가에게 사전에 적시적인 통고 및 관련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초기단계에서 성실하게 이들 국가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규제에 관한 바젤협약(1989년)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전통보 뿐만 아니라 사전 동의를 받을 것도 요구하는 “사전통보동의”(Prior Informed Consent: PIC)까지 규정하고 있다.

최근에 체결된 많은 환경관련 국제협약이 협력의 의무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많은 국가들이 협력의 의무를 규정한 이러한 협약에 대하여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핵물질의 규제와 관련된 국제협약의 경우 특히 그러하다. 체르노빌사건때 구소련이 보여준 비협조적인 태도는 특히 상기할 필요가 있다. 협력의 의무를 선언한 스톡홀름선언과 리우선언은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여 법적 구속력이 없다. 현단계에서 협력의 의무 특히 긴급사태시 신속통보 및 지원의무가 관습법상 확립된 일반원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VI. 汚染者 負擔의 原則

오염자 부담의 원칙(Polluter-Pays Principle: PPP)이란 오염발생에 책임이 있는 자가 오염의 방지와 제거를 위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 원칙은 1972년 OECD 각료이사회가 채택한 “환경정책의 국제경제적인 측면에 관한 지도원칙에 관한 권고문”(Recommendation on Guiding Principles Concerning International Economic Aspects of Environmental Policies)¹⁵⁾이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OECD는 오염자 부담의 원칙은 환경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있도록 정부당국이 결정한 규제조치를 수행할 비용을 오염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라고 정의하였다. 좀 더 일반적으로 말하면 특정상품의 생산이나 주어진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들어간 환경비용은 이러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숨겨진 보조금의 철폐를 위하여 주장된 원칙이다.¹⁶⁾

OECD는 1974년 “오염자 부담 원칙의 이행에 관한 권고문”(Recommendation on the Implementation of Polluter-Pays Principle)을 채택하였다. 이 권고문은 환경오염 방지기술의 개발을 위한 지원과 새로운 오염감축장비의 개발의 필요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OECD는 또한 1989년 “우발적 오염사고에 대한 오염자 부담 원칙의 적용에 관한 권고문”(Recommendation on the Application of the Polluter-Pays Principle to Accidental Pollution)을 채택하고 위험한 시설의 운전자가 이 시설의 우발적인 사고의 방지와 감축을 위한 조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15) C(72) 128, OECD, 1972.

16) Wolfrum, *supra* note 13, p. 17.

한다고 권고하였다. 이 권고문은 또한 사고가 발생한 후 취하여야 할 적절한 조치에 관한 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오염자 부담의 원칙을 도입하였다. EC는 1973 발표된 환경실천계획(Programme of Action on the Environment)¹⁷⁾에서 이 원칙을 채택하였고 그 후 EC이사회는 공동체차원 뿐만 아니라 각 회원국도 이 원칙을 적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1986년 채택된 단일유럽협정(Single European Act)과 1992년의 마스트리트협정(Maastricht Treaty)은 그 법적 근거를 제공하였다.¹⁸⁾

최근에 체결된 환경관련 국제조약들이 이 원칙을 도입하거나 언급하고 있다. 예를 들면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의 주도로 1992년 체결된 월경 국제수로와 국제호수의 보호와 사용에 관한 협약(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and Use of Transboundary Watercourses and International Lakes)¹⁹⁾, 1992년의 동북대서양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협약(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Marine Environment of the Northeast Atlantic)²⁰⁾, 1992년의 발트해 환경보호를 위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of the Baltic Sea Area)이 이 원칙을 언급하고 있다. 1990년의 油類오염 준비, 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Oil Pollution Preparedness, Response and Co-operation)과 산업사고의 越境영향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Transboundary Effects of Industrial Accidents)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원칙이 국제환경법의 일반원칙에 속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이 일반적으로

17) 1973 O.J.(C 112) 1.

18) Article 130R, paragraph 2; Article 130S, paragraph 5.

19) 제2조 5항(b).

20) 제2조 2항(b).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²¹⁾

리우선언은 제16원칙에서 다음과 같이 추상적인 용어로 이 원칙을 선언하였다.

국가당국은 오염자가 원칙적으로 오염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고려하여 환경비용의 내부화와 경제적 수단의 이용을 증진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에 있어서 공동이익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하며 국제무역과 투자를 왜곡시키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정의는 OECD나 EU의 정의보다 크게 약화된 것이고 이 원칙을 적용할 국가의 의무를 심히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이 원칙이 크게 약화된 것은 리우회의에서 이 원칙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개발도상국의 입장을 반영하였기 때문이다. 리우선언은 오염자부담 원칙을 고려하여 환경비용의 내부화와 경제적 수단의 이용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국가당국에게 권장한다는 선에서 이 원칙을 반영하는데 그쳤다. 의제21 제20장도 각국이 폐기물문제에 관한 국내정책에 오염자부담의 원칙을 적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오염자부담의 원칙이 국제환경법상 일반원칙으로 확립되었느냐에 관해서는 논란이 많다. 이 원칙은 경제학적인 원칙에 불과하고 아직 법적인 원칙으로 성숙되지 않았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물론 OECD와 EU 그리고 몇몇 국제조약이 이 원칙을 도입하였고 일부 EU회원국이 이 원칙을 국내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 국제관습법 원칙으로까지 성숙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1) Astrid Epiney und Martin Scheyli, Strukturprinzipiendes Umweltvoelkerrechts (1998), Seite 159; Sands, *supra* note 6, p. 213.

VII. 持續 가능한 開發의 原則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개념은 매우 추상적이고 모호한 용어로서 언제부터 이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는지는 정확히 알수 없다. 다만 1980년의 “세계보전전략”(World Conservation Strategy: Living Resource Conserv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행동계획에서 이 용어를 발견할 수 있고 유엔총회가 1982년 채택한 세계자연헌장(World Charter for Nature)도 사회적·경제적 개발 활동을 계획하고 집행하는데 있어 자연의 보전이 이러한 활동의 필수적인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참작하여야 한다고 하여 자연보전과 개발이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제4원칙에서 선언하였다.²²⁾ 그리고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일명 Brundtland Commission)가 발간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라는 보고서에서도 지속적인 개발에 관한 각국의 세대간 책임(intergenerational responsibility)이 강조되고 있다. 1987년 12월 11일 유엔총회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이 Brundtland보고서를 승인하였다.²³⁾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개념은 1992년의 리우환경개발회의의 준비과정과 개최기간 뿐만 아니라 리우회의가 채택한 리우 환경개발선언, 생물다양성협약, 기후변화협약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다.²⁴⁾ 리

22) World Charter for Nature, Principle 4, in International Legal Materials, vol. 22(1983), p. 457.

23) Resolution GA res. 42/187, U. N. Doc. A/C.2/42/L.81.

24) Ulrich Beyerlin,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 R. Wolfrum(ed.), Enforcing Environmental Standards: Economic Mechanisms as Viable Means(1996), pp. 96-101.

우선언 제4원칙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성취하기 위하여 환경보호는 개발과정의 중요한 일부를 구성하며 개발과정과 분리하여 고려되어서는 안된다”라고 선언하였고 제25원칙은 “평화, 개발 및 환경보호는 상호 의존적이며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라고 선언하였다. 이와 같이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개념은 환경보호와 개발을 통합하여 양자간의 상호 조화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리우선언은 이 개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개념자체가 확립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하등 논란이 없으나 이 원칙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느냐에 관해서는 논란이 많다. 아직 이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용어에 대한 합의된 법적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는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성을 충족시킬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현재세대의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개발”(development that meets the needs of the present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of the future generations to meet their own needs)이라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정의하였다.²⁵⁾ 그리고 1989년에 개최된 UNEP 집행이사회는 이 용어를 “생태계의 복원력과 경제성장을 지탱하는 자연자원기반을 유지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향상시키며 국내적·국제적 형평성을 향하여 진보하는 것”(progress towards national and international equity, as well as the maintenance, rational use and enhancement of the natural resource base that underpins ecological resilience and economic growth)이라고 정의하였다.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은 네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

25) The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Our Common Future(1987), p. 43.

다. 즉 세대간 형평의 원칙,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의 원칙, 자연자원의 공평한 사용의 원칙 그리고 환경과 개발정책과의 통합의 원칙이다. 이 네가지 원칙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중복되어 있어 흔히 결합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²⁶⁾

첫째 원칙인 세대간 형평의 원칙(Principle of Intergenerational Equity)은 자연자원을 현재와 미래 세대의 이익을 위하여 형평성있게 보전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²⁷⁾ 이러한 원칙은 리우선언을 위시하여 야생동식물의 보호, 해양환경의 보전과 해양자원의 보호, 수자원의 보호, 생물다양성, 기후체계, 재생가능한 지구의 자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협약 등에 나타나 있다.²⁸⁾ 세대간 형평성문제는 지속가능한 개발 원칙의 핵심적인 요소를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세대간 형평성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지칭하느냐가 분명치 않다. 특히 “형평”(equity)이라는 용어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어 세대간 형평의 원칙은 법적인 원칙이 아니라 정치적인 목표(political aim)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많다.²⁹⁾

26) P. Sands, *supra* note 6, p. 199; Sands, "International Law in the Field of Sustainable Development: Emerging Legal Principles", in W. Lang(ed.), *Sustainable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Law*(1995), pp. 58-62.

27) Edith Brown Weiss, In Fairness to Future Generations: International Law, Common Patrimony, and Intergenerational Equity(1989), *passim*; *Ibid.*, "Our Rights and Obligations to Future Generations for the Environment", *AJIL*, vol. 84, no.1(1990), p. 198; *Ibid.*, "Intergenerational Equity: A Legal Framework for the Global Environmental Change", in Weiss(ed.), *Environmental Change and International Law*(1992), pp. 385-412.

28) 예를 들면 스톡홀름선언 제1원칙, 리우선언 제4원칙, 기후변화협약 제3조 1항, 생물다양성협약 전문, 멸종위기에 있는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전문, 해양환경보호에 관한 협력을 위한 쿠웨이트지역협약 전문, 남태평양 자연보전협약 전문, 越境 수로와 국제호수의 보호와 사용에 관한 협약 제2조 5항(c) 등이 있다.

29) Wolfrum, *supra* note 13, p. 22; Beyerlin, *supra* note 25, p. 107; Sands, *supra* note 6, p. 200.

둘째 원칙인 자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의 원칙(Principle of Sustainable Use)은 자연자원이 그 재생능력을 초과해서 개발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것은 자연자원의 보존 그 자체보다는 특정한 자연자원의 채취나 이용에 관한 기준의 채택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해양생물자원의 보존을 위한 조약에 그 자원의 채취는 “최적의”(optimal) 또는 “지속가능한”(sustainable) 수준에서 제한되어야 한다는 표준적인 어프러치가 도입되었다. 이와 같이 이 원칙은 원래 해양생물자원의 보존을 위한 협약에 도입되었으나 후에 산림, 야생생물, 습지, 생물다양성의 보호와 기후변화 등 일반 자연생태계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에도 기본적인 원칙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국제협약에서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준으로는 “합리적”(rational), “현명한”(wise), “건전한”(sound), “적절한”(appropriate), “최적의”(optimal) 등의 개념이 제시되고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이들 기준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조약은 그리 많지 않다.

셋째로 자연자원의 공평한 이용의 원칙(Principle of Equitable Use)은 일국의 자연자원의 사용은 타국의 사정을 고려한 형평성에 입각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 원칙은 자연자원의 보전을 위한 책임은 국가간 경제적 발달정도의 차이, 환경오염을 유발한 역사적 책임, 상이한 환경적·발전적 필요와 우선순위 등에 따라서 각국에게 공평하게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그리고 오존층과 파괴물질의 규제를 위한 몬트리올의정서와 같이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협약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기후변화협약은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회원국은 형평의 원칙의 기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³⁰⁾ 생물다양성협약은 이 협약의 목적은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유전자원의 사용에서 오는 혜택의 “공

30) 제3조 1항 및 제4조 2항(a).

정하고 공평한”(fair and equitable) 분배를 실현하는데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³¹⁾ 몬트리올의정서는 오존층파괴에 대한 역사적 책임정도에 따라 오존층파괴물질의 단축일정을 달리 하고 있고 기후변화협약도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누적량에 비례하여 그 감축량을 달리 부과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개발원칙에 속하는 마지막 요소는 환경과 개발의 통합원칙(Principle of Integration of Environment and Development)이다. 이 원칙은 각국이 환경적 고려를 경제 및 기타 개발계획과 연계시키고 환경적 목표를 설정, 적용, 해석함에 있어 경제개발 그리고 그밖의 사회개발의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은 리우선언, 기후변화협약, 그리고 생물다양성협약에 잘 구현되어 있다. 즉 리우선언 제4원칙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성취하기 위하여 환경보호는 개발과정의 중요한 일부를 구성하며 개발과정과 분리시켜 고려되어서는 안된다”라고 선언하고 있고 기후변화협약 제3조 4항은 “경제발전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하는데 필수적임을 고려하여, 인간활동으로 야기된 기후변화로부터 기후체계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조치는 각 당사국의 특수한 상황에 적절하여야 하며 국가개발계획과 통합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생물다양성협약 제6조 b항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관련분야별 계획과 정책에 가능한 한 통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조 a항은 생물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고려를 국가정책결정에 통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³²⁾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은 리우선언을 비롯하여 많은 환경관련 국제협약에 구현되어 있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용어는 매우 추상적이고 모호하며 아직 국제환경법상 이에 대한 합의된 정의가 존재

31) 제1조 및 제15조 7항.

32) Sands, *supra* note 6, pp. 198-208.

하지 않는다.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환경보호와 경제발전을 조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나 양자를 조화시킬 납득할만한 기준을 정하기는 것이 매우 어렵다. 리우선언 제4원칙과 제25원칙은 하등의 기준을 제공하지 못하며 제3원칙이 개발의 권리는 개발과 환경에 대한 현 세대와 미래세대의 요구를 공평하게 충족할 수 있도록 실현되어야 한다고만 추상적으로 선언하여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 내용의 모호함으로 말미암아 이 원칙이 국제관습법상 확립되어 세계의 모든 국가를 구속한다고 보기는 아직 이르다.³³⁾

VIII. 共同의 그러나 差別的인 責任의 原則

공동의 그리고 차별적인 책임의 원칙(Principle of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은 1992년 리우회의에서 채택된 원칙으로서 형평상의 원칙에서 유래된 것이다. 이 원칙은 지구의 환경악화에 대하여 각국이 제각기 다른 책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각국이 차등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리우선언 제7원칙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다.

각국은 지구생태계의 건강과 완전성을 보존, 보호하고 회복시키기 위하여 범세계적 동반자의 정신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지구의 환경악화에 대한 제각기 다른 책임을 고려하여 각국은 공통된 그러나 차별적인 책임을 가진다. 선진국들은 그들이 지구환경에 끼친 영향과 그들이 소유

33) Beyerlin, *supra* note 25, pp. 120-121; Thomas Buss, "Legal Principles i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Relations," in R. Dolzer and J. Thesing(eds.), *Protecting Our Environment*(2000), p. 320.

하고 있는 기술 및 재정적 자원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있어서 부담하여야 할 책임을 인식한다.

이러한 원칙은 기후변화협약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즉 제3조는 협약 당사국이 형평에 입각하고 공통적이면서도 그 정도에 차이가 나는 책임과 능력에 따라 인류의 현재 및 미래세대의 이익을 위하여 기후체계를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개도국을 온실가스의 감축의무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오존층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도 전문에서 개도국의 사정과 특별한 요구사항을 고려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몬트리올의정서는 개도국에게 10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였다. 생물다양성협약도 개도국의 특별한 이익과 필요를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제12조 및 제17조).

이 원칙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환경보호와 관련된 갈등을 해소하여 개도국의 국제환경협약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다. 선진국들은 지구환경오염은 전지구적인 문제로서 전세계 모든 나라가 지구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개도국들은 지구환경의 악화는 선진국의 급속한 공업발달의 부산물로서 선진국이 지구환경개선을 위하여 더 많은 비용과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개도국들은 선진국들이 개도국에 대한 환경기술의 이전과 경제원조를 통하여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적극지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기술이전과 재정지원을 통하여 선진국이 그들의 환경보전을 위한 비용을 덜어 주어야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에 동참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양측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인 책임”이라는 공식이다. 리우선언 제11원칙이 어느 한 국가에서 채택된 기준이 다른 국가, 특히 개도국에게 부적절하거나 지나친 경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은 특히 개도국의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견해는 “가장 진보한 선진국에 있어 타당한 기준이라도 개발도상국에 있어서는 부적당하며 또한 부당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기준의 적용한도에 대해서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선언한 스톡홀름선언 제23선언에서 이미 피력된 바 있다.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인 책임의 원칙”은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전세계 모든 국가의 공동책임(common responsibility)과 환경파괴에 대한 각국의 상이한 차별적인 책임(differentiated responsibility)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동책임”이란 선진국이나 개도국을 막론하고 전세계 모든 국가들이 지구의 자연환경과 인류의 공동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 같이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공동의 선”(common good), “공동의 이익”(common interest), “인류의 공동관심사”(common concern of mankind)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차별적인 책임”은 개별국가가 가지고 있는 각기 상이한 경제발전의 정도와 경제개발의 수행능력, 지구환경파괴에 대한 각국의 상이한 역사적 책임을 고려하여 환경훼손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³⁴⁾ 요컨대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인 책임의 원칙”은 지구의 환경파괴에 대하여 더 많은 역사적 책임이 있는 선진국이 환경문제해결에 개도국보다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아울러 개도국에 대하여 재정지원과 기술이전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칙을 처음으로 도입한 리우선언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 최근에 체결된 몇몇 국제협약이 이 원칙을 적극 지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이 원칙이 세계 다수국가를 구속하는 관습법상의 원칙으로 성숙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4) Alexandre S. Timoshenko, *From Stockholm to Rio: The Institutionaliz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 Lang(ed.), *supra* note 27, p. 154.

IX. 結 論

국제환경법은 주로 국제법에서 유래되어 나왔기 때문에 국제환경법의 일반원칙은 환경관련 국제조약과 국제관습법에서 다수 추출할 수 있다. 국제환경법은 역사가 짧고 아직도 발전도상에 있으므로 관습법으로 까지 성숙된 일반원칙이 무엇이나에 관하여 논란이 많다.

모든 국가는 자국내의 자연자원에 대하여 주권적 권리를 가지며 자국의 관할권내의 활동이 다른 국가의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원칙은 트레일제련소사건, 콜푸해협사건, 라누湖사건 등 일련의 판례와 스톡홀름선언 제21원칙과 리우선언 제2원칙 등에서 확립된 국제환경법상의 일반원칙이다.

각국은 자국내에서 환경에 해로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예방의 원칙은 많은 환경관련 국제협약이 국제환경법의 원칙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리우선언과 스톡홀름선언도 명문으로 원칙중의 하나임을 선언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로 보아 예방의 원칙은 이미 관습법상 일반원칙으로 성숙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심각한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비록 과학적 확실성이 결여되어 있을지라도 조기에 환경훼손 방지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사전주의의 원칙은 예방의 원칙과 명백히 구별된다. 이 원칙은 최근에 체결된 거의 대부분의 국제환경협약에 도입되었고 리우선언 제15원칙도 명문으로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이 원칙이 관습법상 확립되었느냐에 관해서는 논란이 극심하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이 원칙이 비록 논란이 많으나 관습법상 원칙으로 성숙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국경을 초월하는 환경오염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국이 서로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협력의 원칙은 구체적으로 정보교환의 의무, 사전통보 및 협의의 의무, 긴급사태시 신속통보 및 지원의 의무 등을 포함한다. 이 중 정보교환의 의무와 협의의 의무에 관해서는 별로 논란이 없겠으나 긴급사태시 신속통보 및 지원의 의무가 있느냐에 관해서는 의문이 많다.

오염자 부담의 원칙은 OECD가 처음으로 도입한 경제학적 원칙으로 오염발생을 야기한 자가 오염의 방지와 제거를 위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후에 유럽연합, 일부 환경관련협약 그리고 리우 선언이 이 원칙을 도입하였으나 이 원칙은 아직 관습법상 원칙으로 성숙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을 조화시켜야 한다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은 특히 리우회의이후 부각된 원칙이나 그 내용의 추상성과 모호성으로 말미암아 관습법상 일반원칙이나에 관해서 논란이 많다.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용어에 대한 합의된 법적인 정의가 아직 없고 어떠한 기준에서 환경과 발전을 조화시키느냐가 문제해결의 관건인 현실에서 그 논쟁은 한동안 계속될 것이다.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인 책임의 원칙이란 지구환경악화에 대하여 각국이 서로 다른 책임이 있는 까닭에 그 책임정도에 따라 각국이 환경보전에 대하여 서로 다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러한 원칙은 개도국의 입장을 배려한 것이기 때문에 선진국의 호응을 받기 어려워 관습법상 원칙으로 성숙되었다고 보기는 아직 이르다.

【ABSTRAC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Roe, Myong-Joo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has developed a set of principles. They include the principle of sovereignty over natural resources and the responsibility for not causing damage to the environment of other states, the principle of preventive action, the precautionary principle or approach, and principl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addition to the above established principles, new concepts have begun to develop. They include the pollutor-pays principle, the principle of sustainable development(principle of intergenerational equity), and the principle of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There is no agreement whether these three principles are established by customary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or not.